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9
2026.10.19.



소액면세 사라지는 글로벌 시장… 온라인 수출 부담 커진다

[오피니언]
美·EU 소액면세제도 폐지, 日 2028년 소비세 과세
면세 없는 시대 통관관리 (13p)

[이주의 초점]
원산지검증 늘리는 해외 세관…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 검증 29% 증가 (4p)

[위클리뉴스]
국가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22일 시행
“북아프리카 국가와 최초”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8p)

[오피니언: 중국]
핵심광물에 이어 기술·공급망까지… 中 수출통제
동향과 전망 (22p)

[품목분류 동향]
액상형 전자담배 팟(Pod)의 품목분류 해설 (30p)

[일본 관세 리포트]
日, 금(金) 밀수·소비세 부정환급 차단… 수출입 관리
강화 (41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0월 19일(통권 제2199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원산지검증 늘리는 해외 세관…
한국 수출품 대상 29%↑

08 Weekly News

오피니언

13 글로벌 소액면세 축소… 온라인 수출 부담 커진다
김 석 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中, 핵심광물 이어 기술·공급망까지 수출통제
김 창 화 올브라이트(AllBright) 변호사

관세행정실무해설

28 **질의응답사례**
연구용 드론 부품 수입 시 관세 감면

품목분류동향

30 **품목분류해설**
액상형 전자담배 팟(Pod)의 품목분류
김 진 용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3과

39 **세번 바로잡기**
파쇄 후 냉동한 고추의 HS Code
이 영 주 중앙관세분석소

일본 관세 리포트

41 日, 금(金) 밀수·소비세 부정환급 차단…
수출입 관리 강화

원산지검증 늘리는 해외 세관… 한국 수출품 대상 29%↑

2026년 상반기 277건 중 튀르키예 215건으로 77.6% 차지

한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올해 상반기 277건으로 전년 동기(215건)보다 28.8% 증가했다. 전체의 77.6%가 튀르키예에서 요청한 것으로 중국과 인도의 검증 요청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이 2026년 9월 30일 배포한 '20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인 215건보다 62건 증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검증이 276건, 비특혜 원산지검증이 1건으로, FTA 검증 요청은 전년 동기보다 29.6% 늘었다.

2025년 상반기&2026년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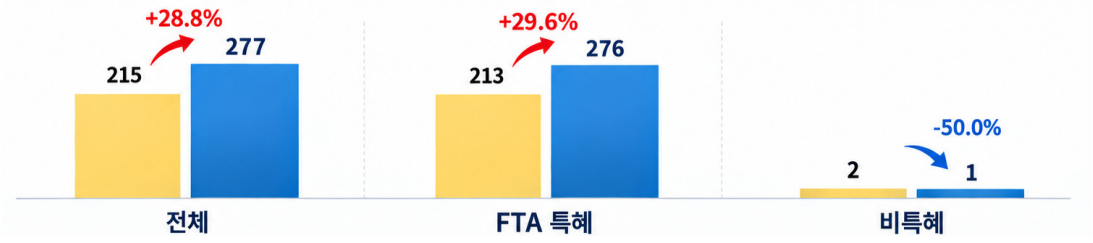

노란색: 2025년 상반기, 파란색: 2026년 상반기, 단위: 건(출처: 관세청,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검증 요청의 97%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205건(74.0%)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제품(24건, 8.7%), 기계류(16건, 5.8%) 순이었다. 이들 3개 품목군이 전체의 88.4%를 차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간 원산지검증 요청은 2023년 323건, 2024년 473건, 2025년 424건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요청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의 65.3%에 달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지난해 연간 전체(340건)의 63.2%에 이르렀다. 다만, 이번 상반기의 증가세가 모든 협정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튀르키예·중국·인도에서 요청이 증가한 반면, EU는 전년 동기와 같았고 ASEAN은 4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2026년 상반기 주요 국가별 FTA 원산지검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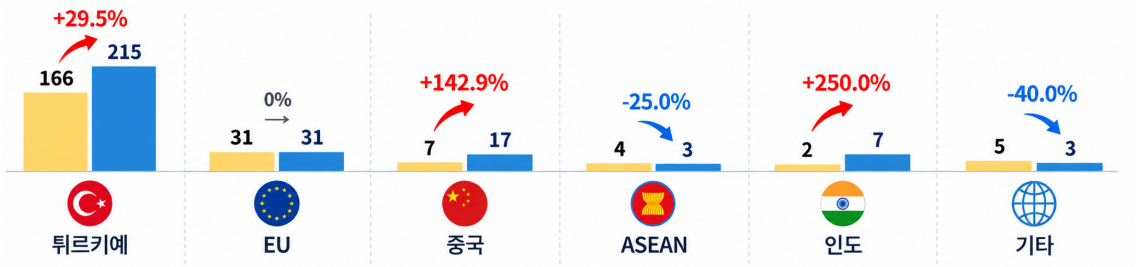

노란색: 2025년 상반기, 파란색: 2026년 상반기, 단위: 건(출처: 관세청,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튀르키예, 섬유류 원산지검증 197건… 반덤핑 등 수입규제도 활용

올해 상반기 튀르키예의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검증 요청은 215건으로 주요 협정 상대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 섬유류 검증 205건 가운데 197건이 튀르키예의 요청이었다. 튀르키예 관세당국은 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요청했다. 검증 대상은 직물 등 섬유류가 대부분이었고 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 펌프 등 기계류도 포함됐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활용해 왔다. 섬유·의류산업은 튀르키예 경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스탄불무역관은 해외시장뉴스에서 튀르키예 정부가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전체 무역규제조치 중 약 25%를 차지하는 등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23년 발표한 튀르키예 무역정책검토보고서의 품목별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반덤핑 조치 129건 가운데 섬유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집계한 원산지검증 요청을 살펴보면 중국산 직물을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튀르키예에 재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튀르키예 FTA에서 해당 면직물은 역내산 실을 사용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수출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수입산 직물을 국내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한국을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섬유류 수출기업은 원재료의 원산지와 생산·가공 내역을 확인하고, 원재료 구매자료와 생산기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튀르키예는 올해 상반기 선박·건설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중후판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검증도 1건 요청했다. 관세청 원산지검증과는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구분하고, 수입국에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품목분류 불일치, 인도는 부가가치기준 검증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올해 상반기 17건으로 전년 동기(7건)보다 142.9% 증가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과 펌프 등 기계류였다. 중국 관세당국은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와 중국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분류 불일치를 이유로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국내 수출업체가 지방산 혼합물의 성분·특성·용도에 맞지 않는 HS Code로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화학제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상품명뿐 아니라 성분·조성·용도와 혼합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수입신고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세번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세번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수출신고 정정 또는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도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건에서 올해 7건으로 250%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관세당국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도 수출기업은 부가가치 계산에 사용한 원재료 가격과 생산비용 등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KOTRA 뉴델리 무역관으로 활동한 오한흠 관세사는 본지에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기준은 HS Code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35% 이상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특정 품목은 더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한다. 수출자는 반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인증범위까지 확인

EU 회원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다. 독일(6건), 덴마크(5건) 등 14개 회원국에서 요청이 접수됐으며,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주요 대상은 이차전지 등 전자기기, 화장품 등 화학공업제품, 편·직물 등 섬유류였다.

검증 과정에서는 인증수출자 업체가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불가리아에 섬유류를 수출하면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했지만,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신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증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전에 인증품목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ASEAN은 3건으로 오히려 25% 감소했고, 영국·베트남·RCEP[1]도 각 1건씩 접수됐다. ASEAN과 관련해 제3국 송장 거래 시 협정에서 요구하는 표시와 송장 발행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베트남처럼 한·ASEAN, 한·베트남 FTA 등 같은 국가와 **복수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적용하는 협정의 원산지기준과 증명 절차로 관리해야 한다.**

대미 수출품 자체 점검… 실질적 변형 충족하지 못한 사례 적발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과 별도로 대미 수출품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실시했다. 미국의 원산지 조사 강화에 대비해 위험성이 큰 수출품을 선정하고 한·미 FTA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 가운데 중국산 직물·편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염색·날염 공정을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염색 등 공정이 있었지만, 중국산 반제품과 완제품의 HS 6단위 세번이 동일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의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대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가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원재료의 원산지와 생산공정, 세번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가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6년 10월 22일 시행

수출입 제한 조사 방법 및 관세청 제공 통계 범위 명확화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무역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가 정비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제공하는 협정관세 관련 통계 범위도 구체화된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과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지만,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 공중도덕 및 국보 보호**가 새로 포함됐다.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입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세부 조사 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해 운용할 예정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수출입 제한 조치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
협정관세 통계 제공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실제 적용 수출입액, 수출입 활용률 등으로 명확화
통상활용지원기관 관리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마련 및 지정 취소 사유와 청문 근거 마련

관세청이 제공하는 협정관세 통계 범위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통상협정 활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 수출입 활용률 등의 통계를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정관세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정·관리 기준도 신설된다.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등 지정 취소 사유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근거도 마련했다. | 김성은 기자 |

"북극항로 시대 대비" 관세청, 부산항 보세·통관 지원

관세청이 2030년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목표로,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친환경 연료와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산항의 보세·통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쇄빙선과 내빙선을 보세공장 밖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은 북극항로 상업항로화와 부산항의 글로벌 거점항만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부산 내 4만 1,087㎡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안전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부산세관도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관세행정 지원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연료유의 신속한 하선·적재와 보세운송을 지원하는 한편, 선박 부품 등 필수 선박용품의 적재를 지원해 원활한 시범운항에 기여했다.

여기에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보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쇄빙선과 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구역에서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하는 등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과 선사들의 통관·물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국내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8월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발해 북동항로를 거쳐 영국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부산항으로 귀항해 성공적인 시범운항을 마쳤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수에즈항로보다 운항거리를 약 7,000km, 운항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중동 분쟁지역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로 활용 가능하다.

| 김다솔 기자 |

“북아프리카 국가와 최초”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가 아프리카 제2위 경제국이자 북아프리카의 핵심 경제 거점인 이집트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1]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이집트와 1995년 수교 이후 경제·산업·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뤘다. 수교 30년 만인 2025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CEPA 추진에 합의했으며, 올해 10월 8일 개최된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북아프리카 국가와 최초로 개시한 협상이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수리, 인력양성, LNG 벙커링 등 조선 인프라 구축 분야를 본격 추진해 국내 기업의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이집트는 약 1억 2,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경제국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을 잇는 수에즈운하를 보유해 물류·교역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 양국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 5억 8,000만달러에서 2025년 기준 17억 4,000만달러로 약 3배 증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이집트 수입국 중 한국은 18위이며, 우리의 주 수출품목은 무기류·철도차량·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원료 순이다. 주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의류, 기타비금속광물, 농산가공품 등이다.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입 규모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1~6월 누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수출	13억 6,600만	2.4	16억 8,800만	22.1	11억 2,000만	57.5
수입	2억 200만	△68	7,200만	△64.4	1억 6,800만	355.4

단위: 달러, %(출처: KOTRA ‘2026 해외출장 가이드’)

정상회담이 진행된 날 산업부는 이집트와 조선산업 역량 강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한·이집트 조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친환경 선박 수리와 인력 양성,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친환경 조선 인프라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선박 건조와 수리 분야 진출뿐 아니라 특수선 분야의 협력과 조선 기자재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에너지·인프라, 첨단제조·교통, AI·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도 모색한다. 대한상공회의소

1)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물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에 관한 협의 포함

는 10월 7일 진행된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의 에너지·플랜트·수처리 등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첨단제조·교통 분야에서 이집트 항공 우주산업과 수소트램 등 미래 교통 분야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AI·디지털 분야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다솔 기자 |

2026년 9월 ICT 수출 사상 최초 700억달러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700억달러를 넘어섰다. ICT 수출이 전체 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가장 높은 62.1%로 올라섰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월 14일 발표한 '2026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254억달러)보다 195.8% 증가한 751억 5,000만달러다.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 8월의 599억 8,000만달러보다 151억 7,000만달러 늘었다.

9월 ICT 수출입 실적

구분	주요 실적
수출	751억 5,000만달러(195.8% 증가)
수입	214억 3,000만달러(55.3% 증가)
무역수지	537억 1,000만달러 흑자
전체 수출 중 ICT 비중	62.1%(역대 최고)

ICT 주요 품목별 수출 및 주요 요인

품목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주요 요인
반도체	603억 3,000만달러	262.8% 증가	AI 수요·메모리 가격 상승
컴퓨터·주변기기	71억 6,000만달러	393.0% 증가	SSD·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휴대폰	19억달러	28.2% 증가	부분품·고가 완제품 증가
디스플레이	17억달러	11.5% 감소	휴대폰용 OLED 수요 감소
통신장비	2억 2,000만달러	2.3% 감소	폴란드·튀르키예·일본 수요 감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반도체 수출은 603억 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62.8% 증가했다. 전체 ICT 수출의 80.3%에 해당하며,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와 범용 메모리 고정거래가격 상승이 반도체 수출

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메모리반도체는 358.6%, 시스템반도체는 28.9%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393.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수출시장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홍콩으로 수출은 30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은 전년 동월보다 420.1% 늘어난 151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9월 ICT 수입(214억 3,000만달러)은 반도체(94.5%), 휴대폰(40.9%), 컴퓨터·주변기기(48.4%) 등 주요 품목 다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138억달러) 대비 55.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7억 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 김성은 기자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3.3%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7월 전망치인 2.6%에서 3.3%로 0.7%p 상향** 조정했다. 2027년 성장률도 0.3%p 높인 2.8%로 전망했다.

IMF는 AI 하드웨어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을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꼽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업 거점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평균(3.1%)과 선진국 평균(2.1%)을 웃돌았다. 미국은 기술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일본은 에너지 비용 부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으로 선진국 3.1%, 신흥국 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7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에너지 공급·물류 여건 회복을 전제로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 김다솔 기자 |

2026년 10월 기준 IMF 주요 세계경제전망

국가	2025년	2026년	2027년
세계	3.5%	3.1%	3.4%
선진국	2.0%	2.1%	1.8%
한국	1.1%	3.3%	2.8%

글로벌 소액면세 축소… 온라인 수출 부담 커진다

美·EU 소액면세제도 폐지, 日 2028년 소비세 과세



김 석 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미국과 EU가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폐지한 데 이어 일본도 2028년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건수의 46.5%를 차지하고, 미국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금액 기준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양국의 제도 개편은 K-뷰티 등 저가·소형 소비재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 역직구[1]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소액면세에 의존한 역직구 수출에서 벗어나 품목분류·원산지·착지가격[2]·제품규제·플랫폼 과세와 현지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대, 소액면세제도는 왜 폐지되는가

소액면세제도는 징수할 수입 세금보다 신고·심사·징수에 드는 행정비용이 더 큰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이 제한적이었던 시기에는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문·결제·물류·통관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면서 제

1) 해외 소비자가 국내외 온라인몰에서 한국 제품을 주문하는 온라인 수출방식(B2C)으로 최근 한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 착지가격(Landed Cost):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이 구매자에 최종 도착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

도의 성격이 달라졌다. 과거 예외적으로 이용되던 소액면세 통로가 수십억 개의 저가상품을 유통하는 표준 수입경로로 바뀐 것이다. 동일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제품안전·표시·환경 규제를 부담하지만, 해외 판매자는 소액 개별배송을 통해 그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세관의 위험관리 환경도 악화됐다. 하나의 주문을 여러 소포로 나누는 분할배송, 저가신고, 불분명한 품명과 원산지 오신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관세와 통관관리가 약화된다. 마약·위조상품·불법 의약품·위해제품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주요국의 소액면세 폐지**는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게 조세·통상·제품안전 정책을 다시 재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미국, 800달러 소액면세제도 전면 중단의 배경

미국은 2016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에 따라 소액면세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했다. 높은 면세한도는 전자상거래 성장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했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미국 직배송이 급증하면서 제도의 남용과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처리한 소액면세 화물은 2020년 6억 3,670만건에서 2024년 13억 6,000만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에는 중국·홍콩발 물품에 대한 면세 중단과 전 세계 소액면세 중단의 영향으로 9억 4,250만건으로 감소했다.

미국은 소액화물이 합성마약과 원료, 위조상품, 강제노동 관련 제품 및 안전기준 미달 상품의 반입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식 수입신고보다 제출정보가 제한적이어서 CBP가 개별 화물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개편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에 미국은 행정명령 제14324호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 '관세법' 제321조에 따른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를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종전에 면세되던 저가 상업용 화물에도 기본관세와 품목·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관세, 세금 및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율에 그치지 않는다. 화장품 한 개, 음반 한 장, 패션소품 한 개를 각각 직배송하면 관세 외에도 통관대행료, 운송사의 세금대납 수수료가 주문마다 발생한다.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관세보다 건별 고정비가 수익성을 더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한·미 FTA 특혜관세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 판매를 계속하려면 재고관리단위(SKU, Stock Keeping Unit)별로 HTS Code, 재질·용도, 거래가격, 원산지와 원산지 증빙을 상품마스터로 관리해야 한다.

2020~2025년 미국 소액면세 화물 처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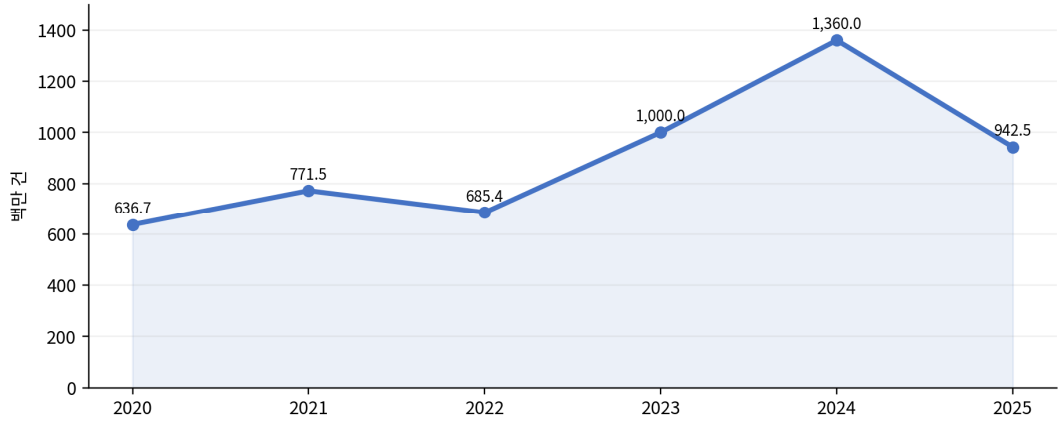

회계연도 기준. 2025년 수치는 중국발 및 전 세계 소액면세 중단의 영향을 포함하므로 종전 연도와의 단순 비교에 유의
(자료: 미국 CBP, 편집: 저자 정리)

EU 소액직구 면세 종료… 품목 범주별 3유로 관세

EU의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물품은 2022년 13억 9,000만개에서 2025년 58억 8,000만개로 증가했다. 2025년 저가화물은 전체 수입 품목수의 약 98%를 차지했지만, 수입금액 비중은 약 2.1%에 불과했고 평균가격은 8.82유로였다.

EU는 이러한 수입구조가 역내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저가신고·분할배송과 위조상품 유입을 촉진하며, 제품안전·환경규제를 우회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수십억 개의 상품을 검사해야 하는 세관과 시장감시기관의 부담, 소형포장과 반품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

EU는 2021년 7월, 22유로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먼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 수입물품에는 1유로부터 VAT가 부과된다. 150유로 이하 역외판매에는 수입

원스톱 신고제도(IOSS, Import One-Stop Shop)[3]를 이용해 판매시점에 VAT를 징수·납부할 수 있고, 플랫폼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촉진한 경우에는 플랫폼이 세금 납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022~2025년 EU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물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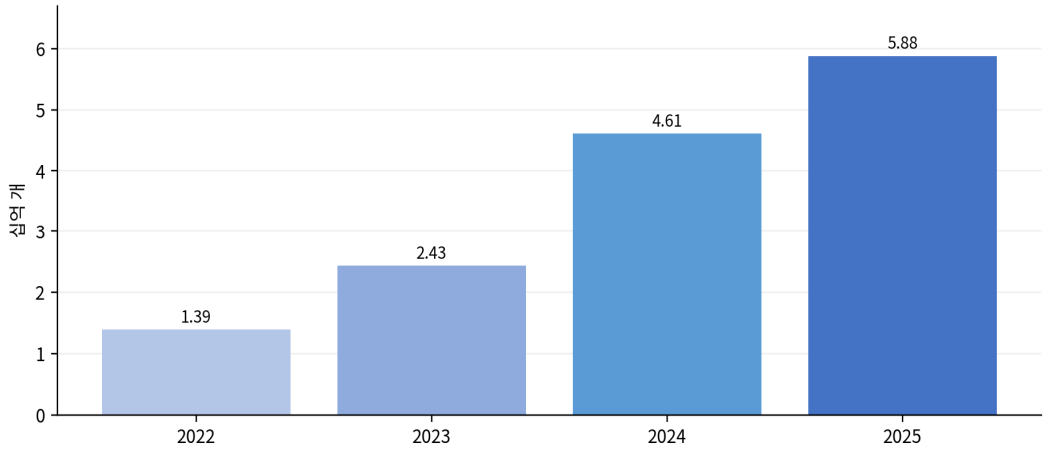

2025년 58억 8,000만개(자료: EU 집행위원회 DG TAXUD Surveillance Database, 편집: 저자)

관세 측면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물품의 면세를 폐지**하고, **2028년 7월 1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소액화물에 포함된 관세 품목 범주별로 3유로를 부과**한다. 이는 소포 한 개당 일률적으로 3유로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 소포에 서로 다른 품목 범주에 해당하는 화장품·의류·액세서리를 함께 넣으면 3유로의 관세가 품목 범주별로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EU 수출기업은 VAT와 임시관세뿐 아니라 통관·취급수수료까지 반영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할 착지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화장품·전기제품·완구·생활용품은 관세와 별도로 EU 책임자 지정, CE 마크[4] 적합성, 일반제품 안전규정, 화학물질 및 포장규제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IOSS 번호와 판매·결제 정보가 통관자료에 정확히 연계되지 않으면 VAT가 중복 징수되거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3) 비EU 국가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 150유로 이하 소액 상품에만 적용되며 VAT를 판매 시점(결제 시)에 미리 징수한다.
4) CE 마크(Communaut European Mark): EU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로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일본, 소액면세 개편… 관세는 유지하고 소비세는 부과

일본의 수입허가 건수는 2019년 약 5,100만건에서 2025년 약 2억 2,700만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2025년에는 과세가격 1만엔 이하 물품이 약 2억 800만건으로 전체 수입허가 건수의 90%를 넘었다. 일본 재무성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반입되는 B2C 항공 소형화물이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현행 제도에서는 과세가격 합계 1만엔 이하인 수입물품에 관세와 수입소비세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2028년 4월 1일부터 국경 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1만엔 이하 상품은 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 판매자가 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 플랫폼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19~2025년 일본 1만엔 이하 소액 수입물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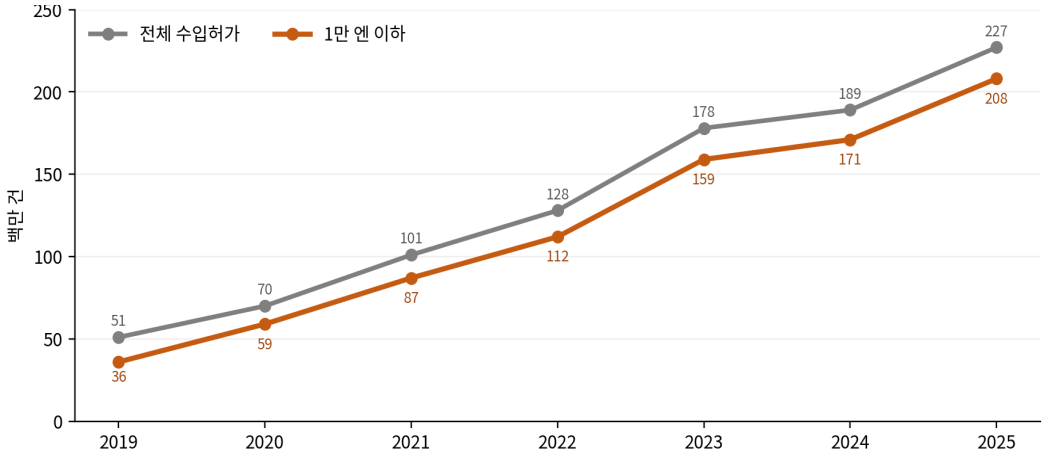

단위는 100만건으로 반올림. 1만엔 이하 수치는 재무성 가격대별 수입허가 통계를 재구성(자료: 일본 재무성, 편집: 저자)

한국 역직구 건수는 일본, 금액은 미국이 주도

관세청의 2025년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7,102만 6,000건이다. 일본이 3,305만 8,000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중국 650만건, 대만 430만 8,000건, 미국 235만 4,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국가별 수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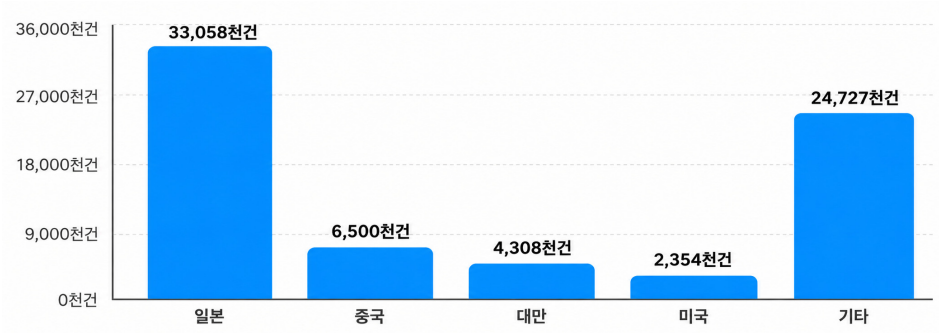

단위: 1000건, 일본이 전체의 46.5%를 차지[자료: 관세청(2026.5.),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통계', 편집: 저자]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과 짧은 배송기간, 한류와 연계된 화장품·패션·음반·캐릭터 상품의 반복구매로 다빈도·소액 주문이 발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28년 소비세 소액면세 개편은 많은 한국 판매자와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금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5억 640만달러로 가장 큰 시장이다. 일본은 1억 3,230만 달러, 중국은 1억 2,73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수출건수 비중은 작지만, 주문금액과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다. **한국 역직구**는 **일본 중심의 다빈도·소액 거래**와 **미국 중심의 고액 수출**이라는 구조로 돼 있다.

20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3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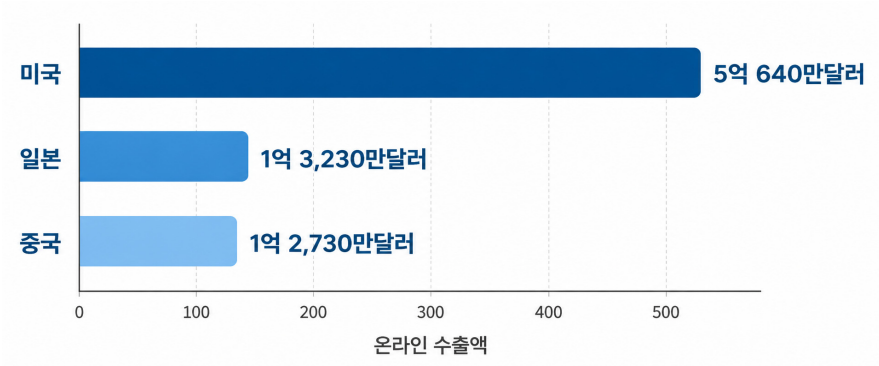

전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11억 490만달러. 미국 45.8%, 일본 12.0%, 중국 1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6.1.29.),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편집: 저자]

소액면세 폐지로 달라지는 한국 역직구의 수익구조

미국의 800달러 이하 관세면제 폐지와 일본의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는 한국 역직구 기업의 가격과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판매자가 세금과 통관비를 부담하면 마진이 감소하고, 배송 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면 수취 거부와 반품이 증가할 수 있다.

20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1억 490만달러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6억 6,370만달러, 의류 1억 70만달러, 컴퓨터 7,920만달러, 문구·완구 3,550만달러 등이다. 특히 화장품은 전체의 60.1%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4.3% 증가해 K-뷰티가 온라인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에 포함되는 K-푸드도 한류 확산과 해외 소비층 확대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따라서 한국 역직구는 화장품, 의류, 컴퓨터, 문구·완구와 함께 K-푸드 등 한류 연관 소비재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들 품목은 소형·저가 제품과 반복구매 비중이 높아 관세보다 건별 통관·배송·세금대납 비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품목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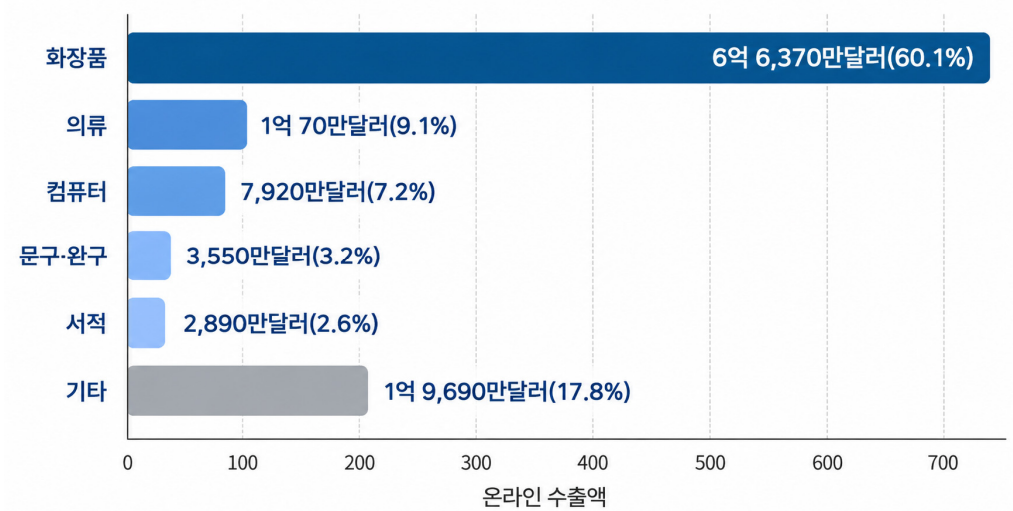

전체 수출액 11억 490만달러, 전년 대비 6.3% 증가, 화장품 전체의 60.1%, 전년 대비 14.3% 증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6.1.29.),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편집: 저자]

개인 우편발송도 HS Code와 목적국 과세제도 확인 필수

소액면세 축소는 해외 지인에게 우체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우체국의 HS Code 요구는 소액면세 폐지로 새로 생긴 절차는 아니다. 미국과 EU 등이 국제우편물의 전자 세관정보를 사전에 요구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도 세관신고서에 품목별 HS Code, 상세 품명, 수량, 가격과 원산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관세액까지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HS 6단위 코드와 실제 가격·원산지를 확인**하고 **'선물'이나 '생활용품' 대신 재질과 용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최종 품목분류와 세액은 도착국 세관이 결정한다

국가별 차이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를 폐지했지만 개인 간 진정한 선물은 수취인 1인당 하루 100달러 이하에서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EU도 대가 없이 비정기적으로 보내는 개인 간 선물은 1회 45유로까지 면세되지만, 온라인 구매상품은 VAT와 관세 적용을 받는다. 일본은 현재 과세가격 합계 1만엔 이하 물품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며, 2028년 소비세 개편도 해외 통신판매 물품이 주된 대상이므로 개인 간 선물과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발송자는 HS Code, 상세 품명, 실제가격, 수량, 원산지와 발송 목적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식품·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면세 여부와 별도로 검역·성분·제품안전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국가별 접수조건과 도착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제우편물에도 HS Code 기재 의무 확대

UN 산하의 전문기구 만국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은 2025년 9월부터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를 포함한 상업용 국제우편물의 HS Code 입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2025년 9월 1일부터 미국행 상업용 국제우편물에는 6단위 HS Code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이 800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혜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2025년 8월 29일과 불과 사흘 차이다.

UPU는 2025년 2월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통관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별로 전자통관정보 제출 요구가 확대되면서 국제우편망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점을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2025년 9월 미국의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EMS 프리미엄으로 발송을 재개하며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HS Code·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알렸다.

면세 없는 시대, 통관관리 역량이 경쟁력이다

수출기업은 **관세, VAT·소비세, 통관수수료, 세금대납 비용과 반품비를 반영한 국가별 착지 가격을 산정**하고, **HS Code·원산지·성분·제품규제 서류를 재고관리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 FTA 원산지와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가격, 일본은 소비세 포함가격과 플랫폼 정산, EU는 IOSS(수입원스톱신고제도)와 품목 범주별 3유로 관세 및 제품안전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면세한도의 유지·폐지를 넘어 통관정보의 연계와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운송인과 특송업체는 입항 전 적재화물목록과 목록통관 정보를 제출하고,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주문·결제·배송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플랫폼의 거래정보와 통관정보 간 연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사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성실업체에는 신속통관을, 과소가격·허위품명·분할수입 등 고위험 거래에는 집중검사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수준의 통관시설·인력·장비 확충만으로 폭증하는 물량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정보·거래이력·운송경로와 X-ray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지능형 위험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한국 역직구의 경쟁력은 면세혜택보다 브랜드 가치, 규제 대응력, 물류 효율성과 착지가격 관리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5)]

5) 참고문헌

- 중소벤처기업부. 2026. '2025년 중소기업 수출, 1,186억 달러 기록(+6.9%)'. 1월 28일.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6.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to New Customs Duty Rules for Small Parcels.' 11 February 2026.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Goods Bought Online.'
- Ministry of Finance Japan. 2025. '急増する少額輸入貨物の現状と課題'.
- Ministry of Finance Japan. 2026. '消費税法等の改正'.
- The White House. 2025.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Executive Order 14324.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5.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Commerce—De Minimis Statistics.'
-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 스마트접수-세관신고서 작성항목'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nding gifts not exceeding $100 in value to family and friends in the United States' 및 'Executive Order 14324-International Mail'
- European Commission,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 일본 세관, 'Duty exemption for goods at a total customs value of 10,000 yen or less' 및 'Customs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Postal Items'

中, 핵심광물 이어 기술·공급망까지 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 동향과 규제 전망
美·中 정상회담에도 불확실성 지속



김 창 화(Jin Changhua)
올브라이트(AllBright) 변호사

수출통제는 기업의 비주류 컴플라이언스 업무분야에서 최근 대외 경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의제로 변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체계적으로 제정,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정적인 물품목록 관리에서 반제재, 차단, 산업체인·공급망 안전 등의 메커니즘과 연동해 운용되는 종합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법률·법규와 공개된 사례를 참고해 최근 동향을 정리하고 중국 수출통제 방향을 전망해 보도록 한다.

Ⅰ. 중국 수출통제 현황

1. 법률 체계: 통제 및 반제재 운용 체계 구축

법률·법규	시행일자	핵심 내용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2020년 12월	통제목록, 허가와 통제명단제도 확립
이중용도물품수출통제조례 (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	2024년 12월	이중용도물품 통제 규칙 통합, 역외 적용 명확화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2026년 3월	벌금 상한을 50만위안으로 인상, 자격 벌칙 신설

법률·법규	시행일자	핵심 내용
반외국제재법 및 그 시행 규정 (反外国制裁法)	2021년 6월 2025년 3월	반제재목록 및 외국 차별적 조치의 집행 협조에 대한 법적 책임 수립
불신실체명단규정 (不可靠实体清单规定)	2020년 9월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 실체에 대한 조치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차단방법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2021년 1월	외국법률과 조치의 부당 역외 적용에 대한 승인, 집행, 준수의 금지
국무원의 산업체인·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제834호령)	2026년 3월	핵심 영역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안전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반외국부당역외관할조례 (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제835호령)	2026년 4월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의 규제, 집행금지령 등 반제재 도구의 확립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기타 부수적인 법률규정을 집중적으로 제정해 반제재 수단과 협동해 운용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신규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책임 조항이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50만위안으로 인상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어 책임 및 결과가 현저히 가중됐다.

2. 통제 범위: 자원에서 기술로, 국가별로 확대

시기	공고	주요 통제 내용
2023년 7월	상무부·해관총서 2023년 제23호 공고	갈륨(镓), 저마늄(锗) 관련 물품
2025년 2월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10호 공고	텅스텐(钨), 텔루르(碲), 비스무트(铋), 몰리브데넘(钼), 인듐(铟) 관련 물품
2025년 4월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18호 공고	사마륨(钐), 가돌리늄(钆), 터븀(铽), 디스프로슘(镝) 등 7종 중·중희토류(中重稀土) 물품
2025년 10월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55호~제58호 공고	초경질 소재, 희토류 설비 및 원·부자재, 리튬배터리(锂电池)와 인조 흑연 음극재(石墨负极材料)
2025년 10월	상무부 2025년 제61호, 제62호 공고	'0.1% 규칙' 및 희토류 전 산업체인 기술
2026년 1월	상무부 2026년 제1호 공고	이중용도물품의 대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수출 금지
2026년 7월	상무부·해관총서 2026년 제29호 공고	헬륨(氦气)의 임시 수출 금지
2026년 8월	상무부 2026년 제34호 공고	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품의 대미 수출에 대한 건별 엄격 심사, 허가 편의 미적용

상무부·해관총서 자료 토대로 저자 정리

법률 체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는 가운데 통제 대상의 확대는 규제 초점의 변화를 더욱 잘 보여준다. **2023년 갈륨·저마늄(Germanium, 게르마늄) 통제 이후 통제 공고를 발표하는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통제 대상 또한 광물 원료에서 설비, 기술과 완제품으로 확대됐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제61호 공고로 처음 신설된 '0.1% 규칙'이다. 해외 **제조제품에 중국의 통제 대상 희토류 성분이 포함돼 그 가치 비중이 0.1%에 도달하는 경우 재수출 전에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또한 제34호 공고는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해 통제 조치가 국가별로 세분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3. 법률집행 추세: 사건 수와 처벌 강도의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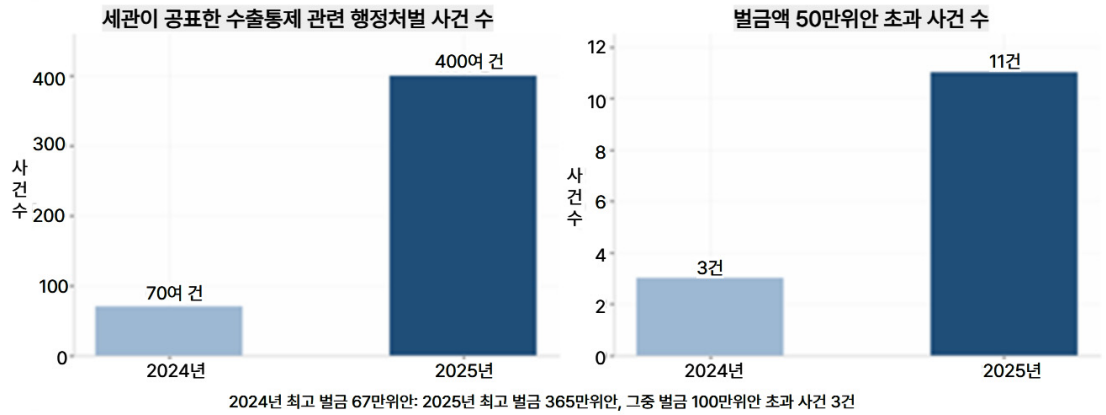

2024~2025년 수출통제 관련 행정처벌 사건 수와 처벌 강도의 비교(출처: 저자 작성)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도에 세관이 적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처벌 사건은 2024년도를 훨씬 초과하며, 벌금액이 50만위안(한화 약 1억 129만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2024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그 중 벌금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은 3건이고, 최고 벌금액은 365만위안(약 7억 3,945만원)에 달한다. 법률집행은 희토류 및 그 제품, 흑연 및 그 제품, 핵심 광물, 화학품, 산업 설비와 드론 등의 영역에 집중돼 있으며, 완제품에 포함된 미량 통제 성분까지 구체화됐다.

법률집행의 기준은 두 건의 공개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텐진의 한 기업은 허가 없이 금속 비스무트를 2만여 킬로그램 수출했는데, 조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수출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하이의 한 회사가 수출한 자석은 통제 대상 사마륨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사후에 허가증을 보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2만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선(先)수출 후(後)증명서 보완'으로는 더 이상 위법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제명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다. 2026년 상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스바루주식회사, 방위연구소 등 40개 일본 기관·기업을 수출통제 관찰명단에 등재해 더욱 엄격한 최종 사용자 조회를 실시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제한하면서 일본의 칸토덴카(关东电化)와 주오쇼코(中央硝子)는 반도체 핵심 원료인 육불화텅스텐(六氟化钨) 생산라인을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이는 수출통제 조치가 실제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Ⅱ. 수출통제 전망과 향후 강화될 가능성

1. 제도의 진화: '목록 중심'에서 '공급망 전반 관리'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목록에 등재되면 곧 통제한다"에서 물품, 기술, 최종 사용자와 해외 가공 단계까지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추세는 ① **통제 대상이 광물 원료에서 설비, 기술과 완제품으로 확장**되는 점, ② 일본, 미국에 대해 각각 표적화된 공고를 발표한 것처럼 **국가별 조치가 세분화**되는 점, ③ '0.1% 규칙'은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역외적용 규칙의 기본 틀이 이미 형성**됐다는 점이다.

2. 통제 수단이 경제무역 협상에 깊이 편입

수출통제는 이미 美·中 경제무역 공방의 핵심 카드가 됐다. 2025년 10월 美·中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에서 달성된 안배가 대표적이다. 즉, 미국 측은 對中 수출통제 '50% 관통 규칙' 및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했고, 중국 측은 이에 상응해 2025년 10월 9일에 공표한 수출통제 조치와 한화의 5개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역시 동시에 1년간 중단했다. 앞으로도 일부 조치를 중단·완화하는 동시에 특정 품목·기업·국가에 대한 통제는 더욱 세분화되는 방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8월의 對美 드론 통제 공고에는 별도의 정지 조항도 설정되지 않았다.

3. 시행 유예된 희토류 수출통제, 그후 가능성

美·中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합의에 따르면 제55호~제58호, 제61호, 제62호 공고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2026년 4월 이 기한을 재천명하고, 순수하게 민간 용도에 해당하는 수출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법에 따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사[1]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美·中 쌍방은 관세 및 비관세조치 시행을 11월 1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고 쌍방 기업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세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첫째, '중단'이지 '폐지'가 아니므로, 공고는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고 법률 체계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신속하게 시행을 재개할 수 있다. 둘째, 통제 조치가 글로벌 희토류, 리튬배터리 공급망에 현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므로, 글로벌 산업체인·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중국 측의 공개적 입장과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 셋째, 보다 가능성 있는 경로는 '조건부 연장' 또는 '선택적 재개'로, **보편적인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은 중단하되 특정 실체, 특정 영역에 대한 정밀 관리는 수시로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향방은 美·中 경제무역 협상의 진전에 달려 있으며, 기업은 현재의 시행 중단을 규제 완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Ⅲ. 기업의 대응 방안

이러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은 우선 자사 제품의 컴플라이언스 속성을 전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품이 통제 대상인지 여부는 기술 파라미터(Parameter, 매개변수)와 실제 성능을 판단 근거로 해야 하며 세관 품목분류(HS Code)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은 또한 제품 중 중국의 수출통제 성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산출해야 한다.

거래 단계에서 기업은 거래 상대방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해 상대방이 통제명단, 관찰명단 또는 불신실체명단에 등재됐는지를 조회하고,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해 심층 조사를

1) www.gov.cn/lianbo/202609/content_7082235.htm

진행해 화물이 중간상을 거쳐 제한 대상에게 재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한다.

계약 관리 측면에서 **2027년 1월 10일**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기한을 넘기는 **장기 주문과 계약은 법률 변경 조항과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수하게 **민간 용도에 해당하는 수출은 시행 중단 기간을 활용해 허가 신청**을 서두르고 공급 안배를 확정할 수 있다.

美·中 두 국가의 법률 법규를 동시에 적용받는 기업은 이중 컴플라이언스 충돌 문제를 직시할 것을 권한다. '반외국제재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중국에서 권리침해 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상해해사법원의 판결이 이미 재판 선례를 확립했다. 규칙 충돌과 관련된 계약은 사전에 충돌 해결 조항을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상시적인 관리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물품 식별, 허가 판단과 신고·등록 기준을 내부 절차에 반영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 검토 가능하도록 한다. 핵심 자재에 대해 안전 재고와 대체 경로를 구축하며, 전담 인력을 지정해 규제 동향을 추적하고, 중대한 사항은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전반적으로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외 경영의 필수 관리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정책의 속도는 美·中 관계 및 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일상적인 경영관리에 편입시켜야만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

산업용 드론을 연구하기 위해 드론 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해 신고를 한 기업이면서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관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관세감면신청서와 함께 감면 대상 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물품의 용도설명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품 감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중략> ···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④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원산지

원목 테이블 상판(제9403.60호)을 수입해 국내에서 별도 제작한 다리를 결합한 후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최종 판매 테이블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 생산 시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중 단순가공한 물품과 일부류를 제외한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에 따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르면, 국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돼 **HS 6단위가 변경되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을 차지하거나,

HS가 변경되지 않았어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원목 테이블 상판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이뤄지는 조립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제86조 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5항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액상형 전자담배 팟(Pod)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사항 -

김 진 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Ⅰ. 개요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 담배 등의 흡연식 담배의 대안 제품으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다. 전자담배는 통상적으로 카트리지(입을 대고 증기를 흡입하는 물부리), 기화 장치(무화기, Atomizer), 전지 및 전자회로로 구성된다.[1)]

액상형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e-cigarette)는 2003년 중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며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릴 등)와는 다른 형태의 제품이다.[2)]

2003년 처음 출시된 1세대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됐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쥴(JUUL)과 같은 4세대 모델이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는 작은 펜 모양부터 스마트폰 크기와 유사한 대형 기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3)]

액상형 전자담배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일회용 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 니코틴 용액이 내장돼 있고, 배터리도 충전돼 있지만, 니코틴 용액을 보충할 수는 없다. 사용이 간편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② 충전형 전자담배(refillable e-cigarette): 니코틴 용액을 보충할 수 있는 탱크나 챔버(chamber)가 있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모델은 에어로졸의 양이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③ 미리 채워진(pre-filled) 카트리지(cartridge) 또는 팟(pod) 타입: 이 모델은 배터리 충전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트리지가 소모되면 교체한다.[4)]

1) 출처: 위키피디아 사전
2) 출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3) 출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4)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액상형 전자담배의 종류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특히 충전형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원하는 액상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으며, 기화기(무화기)용 코일을 교체할 수 있는 코일 교체형과 카트리지에 기화기(무화기)용 코일이 결합돼 코일을 교체하지 않는 팟 교체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충전형 카트리지&전자담배 키트



(좌) 충전형 카트리지 예시, (우) 사각형으로 표시된 '팟'(출처: EDGE)

이러한 팟과 카트리지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자담배 키트(kit)에 부착돼 사용된다.

최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충전형 전자담배 팟과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된 적이 있다.

참고로, WCO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인 '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 수용하는데, 이 의견서는 국내 품목분류 결

정 시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독자들은 수출입 신고 시 유사한 물품이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등재돼 있으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액상 전자담배 팟과 카트리지의 두 가지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점 사례

1. 물품 ①(가열 코일이 내장된 팟)과 물품 ②(가열 코일이 없는 카트리지)

물품 ①	**가열 코일이 내장된 팟** 전자담배 키트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교체용 팟으로서 기화기용 코일(0.8Ω 및 1.2Ω 메쉬드 코일)과 마우스피스가 장착돼 있음. 상단의 마우스피스를 제거해 2ml 용량의 e-liquid를 충전 가능함.
물품 ②	**가열 코일이 없는 카트리지** 전자담배 키트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빈 카트리지임. 2ml 용량의 e-liquid를 충전 가능함. 마우스피스가 장착돼 있고, 기화기용 코일(0.8Ω 및 1.2Ω 메쉬드 코일)이 제시되지 않고 기기와 호환 가능함.

2. 쟁점 세번

1	**제8543.40호**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2	**제8543.90호**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의 부분품

3. 의견

1) 갑론: 물품 ①(제8543.40호), 물품 ②(제8543.90호)

HS 4단위 분류 시 쟁점물품 2종은 제8543호의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돼 이견은 없음.

HS 6단위 분류 시 쟁점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해 제8543.40호의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 분류할지, 아니면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아 제8543.90호의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임.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돼 있고,

쟁점물품 ①은 코일이 내장돼 **기화기(atomizer)를 포함하는 팟**으로서 **기화기는 제8543.40호의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 ①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인 제8543.40호에 분류함.

쟁점물품 ②는 기화기 역할을 하는 코일이 제시되지 않은 카트리지로서 **기화기가 제시돼 있지 않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쟁점물품 ②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의 부분품인 제8543.90호에 분류함.

2) 을론: 물품 ①(제8543.90호), 물품 ②(제8543.90호)

HS 4단위 분류 시 쟁점물품 2종은 제8543호에 분류되고, HS 6단위 분류 시 쟁점 사항은 위와 같음.

쟁점물품 ①은 코일이 내장돼 기화기 역할을 포함하는 팟으로서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 ①에 더해 배터리 및 전자회로(스위치 등) 등이 추가돼야 함. 즉 **전자담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전자회로 등이 있어야 되므로 전자담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쟁점물품 ①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의 부분품인 제8543.90호에 분류함.

쟁점물품 ②가 제8543.90호에 분류된다는 논지는 위와 같음.

3) 논의 결과

WCO 논의 시 일부 국가에서는 을론의 논지에 따라 두 가지 물품 모두 제8543.90호에 분류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갑론의 논지에 따라 물품 ①은 전자담배 완성품인 제8543.40호에, 물품 ②는 전자담배 부분품인 제8543.90호에 분류하는 것을 주장했다.

논의 결과, 다수 국가의 주장인 **기화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기화기용 코일이 있는 물품**

①은 **제8543.40호의 전자담배 완제품**으로 결정됐고, **기화기 역할의 코일이 없는 물품** ②는 **제8543.90호의 전자담배 부분품**으로 서로 다르게 결정됐다. 이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수용됐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 품목분류의견서)

8543.40	**2. 가열 코일이 내장된 팟** 가열 코일이 내장된 팟(pod)으로, 기화기 기능이 장착되고, 전자담배에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는 마우스피스(흡입구), 상부 주입 시스템, 투명한 액상(e-liquid) 확인창 및 자석식 연결부를 가지고 있음. 액상이 없는 상태로 제시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8543.90/1 참조*
8543.90	**1. 가열 코일이 없는 카트리지** 가열 코일이 없는 카트리지로서, 전자담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임. 이는 마우스피스(흡입구), 상부 주입 시스템, 투명한 액상(e-liquid) 확인창을 가지고 있음. 액상이 없는 상태로 제시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8543.40/2 참조*

Ⅲ. 사례 해설

지금까지 전자담배 키트용 팟과 카트리지의 WCO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 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쟁점물품 관련 WCO의 세부 검토사항을 분석하고, WCO HS위원회의 전자담배 기기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WCO에서는 **전자담배의 본질적인 특성을 기화기(atomizer)**로 봤다. 기화기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HS 해설서에도 규정돼 있다.

제8543호 해설서에서 전자담배의 작동은 액체·용액·겔(gel)·담배 플러그(tobacco plug) 등에서 사용자가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ol)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에어로졸은 특별한 전기·전자 구성부품[예: 아토마이저(atomiser)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 **제8543호 해설서**
이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장치로서, 연소 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마우스피스(mouth-piece)를 통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ol)을 만들어 내도록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장치에서 액체·용액·겔(gel)·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장치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른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전기·전자 구성부품[예: 발열체(예: 아토마이저(atomiser),** 초음파 진동기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제2404호에는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는데, 제2404.1호에는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 분류된다.

전자담배용 용액과 같은 경우 제2404호에 분류되는데, 제24류 주 제3호와 제2404호 해설서 규정을 종합하면 연소하지 않고 흡입하기 위해 전기 기화장치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2404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 **제24류 주 제3호**
3. 제2404호에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2404호 해설서**
이러한 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니코틴 함유 용액으로서, 전자담배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따라서 제24류 주 규정, 제2404호 해설서, 제8543호 해설서 등을 종합하면 **가열장치 등 수단은 연소하지 않고 흡입하기 위한 전자담배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WCO 논의 시 일부 국가에서 배터리나 스위치 등이 포함된 키트가 있어야 전자담배 완성품이 되므로 쟁점물품 ①은 제8543.40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통상적으로 배터리나 스위치 등 전자회로는 완성품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주장에 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WCO 결정은 전자담배에 대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본질적 특성 판단 시 어떤 구성요소가 본질적 특성을 가지는지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는 유사한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WCO의 결정사례를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일회용 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에 대한 사례다. 앞서 설명했듯이 전자담배는 통상 액상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나뉘는데, 액상 전자담배는 일회용 전자담배, 충전형 전자담배와 미리 채워진(pre-filled) 카트리지(팟) 타입으로 구분되며, **일회용 전자담배는 WCO 결정에 따라 제2404호에 분류**된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 품목분류의견서)

2404.19 **2. 에센셜 오일 디퓨저(니코틴 및 담배 미함유)**
이 제품은 연소 없이 작동하는 미리 채워진 일회용 전자장치로, 사용자의 입으로 들이마셔 코 밖으로 내쉬기 위한 증기를 생성함. 이 제품은 에센셜 오일(20%)과 글리세린(80%)의 혼합물로 미리 채워져 있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상기 일회용 전자담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이후 WCO는 제2404호 해설서에 일회용 전자담배를 예시로 삽입해 아래와 같이 개정해 운영 중이다.

■ **제2404호 해설서**
(5) 1회용 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 이와 유사한 1회용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예: 전자담배용 용액(e-liquid), 겔(gel)]과 전달 기구(delivery mechanism)를 통합된 하우징 안에서 모두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용액이 다 소모되거나 배터리가 다 사용되면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용액을 다시 채우거나 배터리를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기기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16부의 기계나 전기기기에 분류되지 않고 제4부(제24류)에 분류되는 것은 일회용 전자담배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상 전자담배와 달리 **궐련형 전자담배용 물품**도 다음과 같이 WCO 결정에 따라 **제2404호에 분류**된다.

2404.11 **2. 담배를 함유한 흡입용 제품(그림 1 참조)**

특수 전기 가열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 이 제품은 원통형(길이 45mm, 지름 7.3mm)이며 담배 플러그, 중공 아세테이트 튜브, 폴리머-필름 필터 저밀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마우스피스 필터와 바깥 쪽 및 입구 쪽 용지로 구성되어 있음. 담배 플러그는 에어로졸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글리세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담배, 바인더 및 보습제(물, 구아검 및 천연 셀룰로오스 파이버)를 함유하는 가루로부터 만들어짐. 담배 플러그는 알루미늄이 적층된 종이에 싸여 있을 수 있음.

제품의 총 중량은 약 0.8g이며 담배 플러그의 중량은 약 0.3g임.

제품은 디자이스에 삽입되도록 되어 있으며(그림 2), 디바이스는 담배를 연소시키지 않고 센서로 제어된 열을 제품에 적용함. 입으로 흡입할 때 제품은 가열되어 니코틴을 함유한 에어로졸이 발생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4류 주 제2호 및 제3호) 및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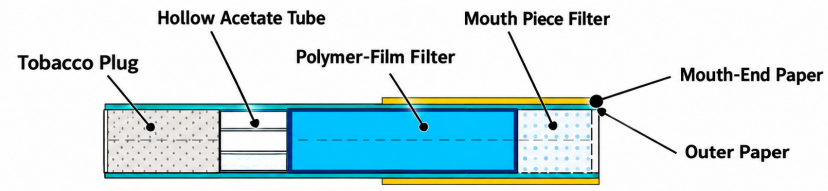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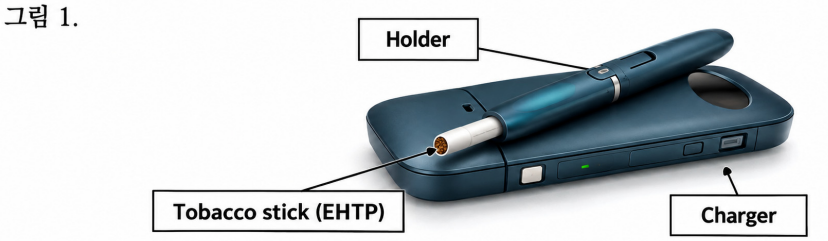

그림 2. 홀더(Holder)와 충전기(Charger)는 제시되지 않음.

담배를 함유하는 이러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제2404호와 제8543호 해설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제2404호 해설서**

(2)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예: **스트립**이나 알갱이)로 되어 있고, 전기장치[전기 가열식 담배 시스템(EHTS)], 화학반응, 탄소 열원(熱源) 사용[탄소 가열식 담배 제품(CHTP)]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담배 가열식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 **제8543호 해설서**

(ii)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personal electric vaporising device) : 예를 들면, **전기가열 담배시스템(electrically heated tobacco system : EHTS),** 초음파 진동 장치(ultrasonic vibration device) 등

으로서, 담배 제품(소호 제2404.11호의 제품)이나 그 밖의 니코틴,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하는 제품(소호 제2404.12호나 제2404.19호의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자담배 용액, 전자담배 팟, 전자담배 기기(일회용 포함) 등은 제2404호, 제8543.90호, 제8543.40호 등 여러 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은 품목분류 시 주의해야 하는 아이템이다.

Ⅳ. 시사점

지금까지 액상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WCO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최근 WCO의 전자담배 관련 사례를 위주로 봤지만 제2404호 관련 다수의 WCO 결정사례는 이번 쟁점과는 달라 살펴보지 않았으며, 추후 기고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결정사례를 추가로 다루고자 한다.

전자담배는 전 세계 각국에서 세금, 국민건강 등으로 품목분류상 관심이 많은 아이템이다. WCO에서도 꾸준히 관련 주 규정이나 해설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들은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 사례와 같이 전자기기이지만 제8543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2404호에 분류되는 등 제2404호와 제8543호 규정을 함께 크로스체크하면서 검토해야 전자담배 관련 품목분류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 언급한 전자담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기능, 용도,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출입신고 시 적정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파쇄 후 냉동한 고추의 HS Code

냉동채소vs.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고추는 가짓과 채소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전래된 이후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에 고추가 접목돼 오늘날 김치, 고추장과 같은 세계적인 발효식품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고추 소비가 많은 나라로 주 산지로 청양, 영양, 보은, 음성이 유명하다.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캡사이신으로 함량에 따라 매운고추와 단고추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실의 크기는 1~30cm로 차이가 많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도 수백 종류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붉은 고추와 풋고추 2가지로 나뉘며 꽈리고추, 청양고추, 오이고추 등 여러 종류의 고추가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녹색 신선 고추를 불규칙하게 파쇄해 소매포장 후 냉동한 것으로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제0710.80-7000호로 신고했다.

제0710호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제0710호 해설서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나 그 밖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는 제외한다(제4부).

본 물품은 **냉동된 고추이나 잘게 파쇄된 상태**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제7류 주 제4호에서는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고 설명하고 있다.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주:
1.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 <중략> …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따라서, 고추를 불규칙하게 파쇄한 본 물품을 제090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2-0000호에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가 세분류된다.

본 물품은 신선한 고추를 불규칙하고 잘게 파쇄해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4.22-0000호에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CHEONGYANG)	제0710.80-7000호 A 27%	Green pepper, crushed	제0904.22-0000호 W2 270%

日, 금(金) 밀수·소비세 부정환급 차단… 수출입 관리 강화

금 HS Code 세분화·수출 시 식별정보 제출 의무화

국제 금 시세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 재무성과 세관, 국세청이 금을 둘러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 행정과 소비세 환급 심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수출화물대상 소비세 환급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탈세를 끊어내기 위한 대책이다.

일본 세관은 2026년 4월 각인된 금을 구분하는 HS Code 세부단위를 신설한 데 이어, 8월부터 수출통관 시 금괴 등의 식별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본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상대 수입국의 수입허가서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수출면세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금 밀수 현황과 재무성·세관·국세청의 단속 대책

일본 재무성 관세국·세관에 따르면, 금 밀수는 2017년 이후 단속·처벌 강화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일본 내 금 수입량과 신규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점에 주목했다.



일본 재무성·세관, '금 밀수 추가 단속 강화에 관하여(2025.11.27.)'를 바탕으로 재구성

금 밀수를 통한 소비세 탈세 구조

1단계(밀수입)	해외에서 일본으로 금을 들여올 때 정식 통관을 거치면 10%의 소비세(내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밀수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한다.
2단계(국내 유통)	밀수한 금을 일본 국내 시장에서 시세로 매각한다. 이때 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부당 차익이 발생한다. 금 가격이 오를수록 부당 시세 차익도 커진다.
3단계(위장 수출 및 부정 환급)	일정 요건을 갖춘 금은 수출신고 시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틈을 노려, 해당 금의 매입 관련 서류를 위조·조작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매입 소비세 10% 환급금을 받는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세관은 2025년 11월 '금 밀수 추가 단속 강화에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금 수출입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국세청 소관의 소비세 수출면세 증빙 요건도 강화하면서 통관과 세제 양측의 관리가 한층 엄격해졌다.

대책 ① 각인된 금의 HS Code 세분류 신설

올해 4월 1일부터 HS 제7108.12호(화폐용이 아닌 미가공 금)의 9단위 수입통계품목번호가 세분화됐다. 제련자 마크·제조번호·순도·중량이 각인된 금과 그 밖의 금을 구분한 것이다. 기존 수출통계에만 적용되던 각인 유무별 세부 분류를 수입 단계로 확대했다. 이로써 수입된 각인 금이 국내 유통을 거쳐 다시 수출되는 과정을 세관 시스템을 통해 추적·대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일본의 HS 제7108.12호(화폐용이 아닌 미가공 금) 수출입통계 품목번호

구분	수입통계 품목번호	수출통계 품목번호
제련업체 마크·제조번호·순도·중량이 각인된 금	제7108.12-010호	제7108.12-100호
기타 금	제7108.12-090호	제7108.12-900호

대책 ② 수출 시 식별정보가 기재된 통관서류 제출

올해 8월 1일부터는 각인된 금을 수출할 때 ▲제련업체를 나타내는 마크, ▲제조번호, ▲순도, ▲중량 등의 식별정보가 기재된 송장·포장명세서 등의 통관서류 또는 해당 데이터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수출업자와 통관업자는 수출신고에 앞서 실제 금에 각인된 정보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책 ③ 수출면세 요건 대폭 강화… '수입국 허가서' 보관 의무

일본에서는 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소비세를 일정 요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출면세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1)]

올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금 수출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거래 상대방의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수출업자는 해당 금이 상대국에서 수입됐음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뿐만 아니라 현금 수령이나 제3자 송금 등 대금 출처가 불명확한 모든 물품의 수출거래에도 일제히 적용된다.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세 환급 적용이 배제되며, 기존 환급액에 대한 소급 추징을 받게 될 수 있다.

韓·日 밀수 사례, 국제 거래 관리의 필요성 보여줘

한국의 금괴 밀수 적발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진석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금괴 밀수 적발 규모는 2024년 4건(7억원)에서 2025년 16건(123억원)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12건(106억원) 적발돼 전년도 연간 적발액의 약 86%에 이르렀다.[2)]

한국과 일본이 연계된 밀수 사례도 확인된다. 관세청은 2025년 3월, 홍콩발 금 약 85kg을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경시청은 같은 해 11월 한국과 일본을 200회 이상 오가며 밀수를 반복하고, 일본 내 금 매입업체에 금괴 약 1톤을 108억엔 상당에 판매한 일당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금 수출입 통관관리와 수출면세 증빙 강화가 불법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소비세 부정 환급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져, 한국을 경유하는 일본행 금 밀수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 강보람 기자 |

1) 일본 '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국세청 고시 제1호(2026.3.31.)
2) 관세청 제출자료, 문진석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국감자료실, 2026.10.5. 게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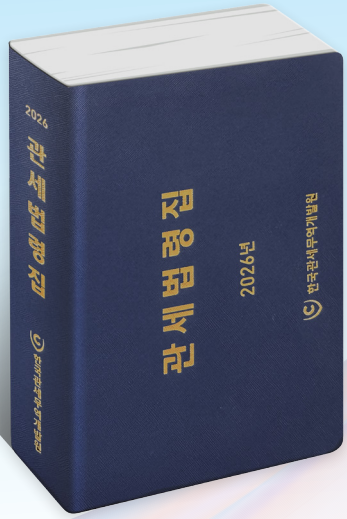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